

도내 정치권, 농수산대 분교 '안될말'

도의회 "농수산대 설치법 일부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민주당 전북도당 "21대 총선 앞둔 지역 여론 지지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 판단"

전북도내에 자리를 잡은 한국농수산대학의 때 아닌 분교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북도의회 소속 39명 전체 의원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성환 의장 등은 "이달 12일 자유한국당 최고일 의원(경북 영주, 문경, 예천) 등이 호남권 외에 농수산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가균형을 훼손하는 행위로 농생명 산업을 특화해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 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원들은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연구관련기관이 집적된 농생명산업 특화 지역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사업을 추진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번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주장은 지역 불균형 부추기는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강력 저지를 천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는 정부 차원의 입장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역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

단한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갈등과 국가 불균형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전북도민과 기필코 저지해 나갈 책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김종희 의원(전북 김제, 부안)은 "한농대-전북혁신도시 고사시키는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유한국당 최고일 의원이 발의한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김 의원은 "경북 출신 일부 의원들이 '벌티캠퍼스'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분할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농대를 경북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음모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발적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심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연대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원전 봉쇄하거나 부결시킴으로써 법안을 무력화 하고, 확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도정 질문

"동학혁명, 전국 단위 확대를"

김만기 의원 촉구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 2, 농산업경제위원회)은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지역주의를 탈피한 전국 단위 계승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125년 만에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드디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게 됐다"면서 "전주, 정읍, 고창, 부안 등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행사나 학술대회 등을 연계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기념주관을 제정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을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곳곳에 방치돼 훼손되고 있는 유적의 적극적인 보존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동학농민



혁명 유적지는 전국 유적지의 43%에 해당하는 156건의 유적이 분포해 도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황토현전적

지, 백산성 등 4건 뿐이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11건이 지정된 게 전부이다"라면서 "나머지 140여 개의 유적이 방치되고 있어 하루 빨리 전수 조사와 함께 유적지 자체에 대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실시해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과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이후 시민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최찬욱 의원 주장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일어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찬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찬욱 의원이 (슈테일리리 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가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김진성 기자

4대 보험 고의누락 기업, 정보 공개 추진

바른미래 김관영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시키지 않고, 해당 비용을 부당 이익으로 취하는 기업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공개 기업의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

하여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최근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비위기업에 정책자금 지원되는 허술한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정보가 공개되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 권한 강화

이용호 의원, 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